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유공자 자녀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보훈특별고용을 통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취업지원 관련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자녀에 대한 보훈특별고용 지원연령 상향 조정(제56조제1항)

- 보훈특별고용 지원연령을 현행 35세에서 39세로 상향

나. 보훈특별고용 선정 결과 통보 시 예외적인 경우 통보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신설(제55조제2항)

다.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직군·직렬 등 개정(별표 8의2)

-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별채용대상 개정

라. 채용신체검사 관련 규정 개정 등 취업지원 운영 관련 미비점 개선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1호 중 “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일반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과 일반군무원”으로, “일반직공무원을”을 “일반직공무원과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일반군무원을”로 한다.

제5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채용시험 실시 등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통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6조제1항 본문 중 “35세까지로”를 “39세까지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7조제2항 본문 중 “36세”를 “40세”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종합병원”을 “종합병원 또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정하는 의료기관”으로 한다.

별표 6의3 제1호의 지급액란 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1호”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로 한다.

별표 8의2 제1호가목1) 및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	방호	방호
2) 과학기술	간호조무	간호조무
술	운전	운전
	위생	위생 사역
	조리	조리

별표 8의2 제1호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2) 직군란 중 “기술”을 “과학기술”로 한다.

2) 기술	관리	차량관리
	조경	조경
	후생	후생

별표 8의2 제2호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	방호	방호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훈특별고용 지원연령 조정에 따른 적용례) 제56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49조의2제2호에 따라 취업희망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의2(취업지원의 신청) 법 제31조의2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이력 서를 첨부한 후 국가보훈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의2(취업지원의 신청) --- ----- ----- ----- ----- -----.
1. 법 제32조에 따라 일반직공 무원 및 <u>관리운영직군에 속하 는 일반군무원</u> (이하 “일반직 공무원등”이라 한다) 특별채 용 대상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 일반직공무 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1. ----- ----- <u>일반군무원</u> ----- ----- -----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0조(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 원 등) ① 법 제32조제1항 전단 에서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 반직공무원</u> ”이란 별표 8의2에 따른 <u>일반직공무원을</u> 말한다.	제50조(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 원 등) ① ----- -----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 반직공무원과 일반군무원</u> ”----- ---- <u>일반직공무원과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일반군 무원을</u> ---.

② (생 략)

제55조(보훈특별고용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그 추천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⑥ (생 략)

제56조(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은 35세 까지로 한다. 다만, 35세 이전에 제49조의2제2호에 따라 취업희망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취업희망 신청서에 한정하여 38세까지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을 한다.

제57조(6·25전몰·순직군경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특례) ①

② (현행과 같음)

제55조(보훈특별고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다만, 채용시험 실시 등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통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56조(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 ① -----
----- 39세 까지로 --. <단서 삭제>

제57조(6·25전몰·순직군경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특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u>36세</u> 이후에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더 이상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체등의 폐업, 휴업 또는 합병, 그 밖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채용신체검사의 판정) ① 법 제35조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에 대한 채용신체검사 합격판정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u>종합병원</u>에서 한다. ② (생략)	(현행과 같음) ② ----- ----- <u>40세</u> ----- ----- ----- ----- ---. ----- ----- ----- -----. 제59조(채용신체검사의 판정) ① ----- ----- ----- ----- ----- <u>중</u> <u>합병원 또는 취업지원 실시기관</u> <u>이 정하는 의료기관</u>---. ②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연 락 처	(044) 202 - 5651